

제434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9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6)
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7)
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2)
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2)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7)
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4)
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0)
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9)
10.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3)
1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2)
1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5)
1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4)
1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7)
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3)
1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1)
1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9)
1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2)
1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4)
2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9)

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6)
23.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4)
2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9)
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0)
26.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2)
2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0)
2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4)
2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4)

상정된 안건

1.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6) 3
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7) 6
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2) 6
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2) 6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7) 6
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10
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4) 11
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0) 11
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9) 12
10.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3) 15
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6) 16
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0) 17
1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2)	18
1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5)	19
1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4)	19
1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7)	20
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3)	20
1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1)	20
1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9)	22
1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2)	22
1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4)	24
2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9)	25
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25
2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0)	26
2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4)	27
2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4)	28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양수산부차관이 불출석했습니다. 아마도 선거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공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법률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6)

(10시04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항 여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유엔해양총회는 해양 생태계 보전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목표로 개최되는 정상급·고위급 회의로서 2028년 4차 유엔해양총회는 2025년 12월 9일 제80차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 개최가 최종 확정되었고 대한민국은 본회의를 주최하고 칠레는 2027년 사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개최 날짜, 도시 등 세부사항은 2026년 하반기 내 유엔 총회 결의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조정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조문별 검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법 제명을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 1조 및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오른쪽 검토의견 중간부분을 보시면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유엔해양총회등’을 유엔해양총회뿐만 아니라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위관리회의가 유엔해양총회의 제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칠레에서 2027년 개최되는 사전 고위급 회의 등과 혼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고위관리회의 등’을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 동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준비기획단의 설치 근거와 구성 및 업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준비위원회와 관련하여 안 제5조제4항은 준비위원회 간사를 집행위원회의 장, 즉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준비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해야 하는 간사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준비위원회의 위원 관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설립 근거를 민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집행위원회의 성격이 단순 자문·보고 기구인지 또는 실질적인 심의 의결 및 조정기구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

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6조는 집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므로 법체계상 ‘준비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비기획단과 관련해서 집행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집행위원회는 보좌, 준비기획단은 실무 지원으로 업무 성격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준비기획단의 업무로 유엔해양총회 등 준비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준비뿐만 아니라 개최도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아래의 표와 조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안 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의 편의 제공 그다음에 안 9조는 기부금품의 접수, 안 10조는 국·공유 재산 무상 대부·사용 및 수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재정적 협조 및 편의 제공 요청 근거와 관련해서 중간 부분의 협조 요청 대상에 법인·단체를 포함할 경우 민간단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조항은 제재 없는 협조 요청의 근거일 뿐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2025 APEC 지원 특별법에서도 동일한 조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무상 대부·사용 및 수익의 규정과 관련해서 제정안의 적용 대상 중 지자체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개최 지자체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병행돼야 하는데 관련 법률안이 소관위에 발의돼 있으므로 심사 단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등의 발행 협조 그리고 안 14조는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유엔해양총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는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에 관한 규정이며 이는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는 유엔해양총회 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항은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입법 조치로 안 제15조제4항은 국가·지자체가 유엔해양총회 등 개최 지자체의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시행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8조에서 국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도 안 제8조 각호의 하나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조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 그리고 제17조·제19조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등과 이에 대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과 유효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202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시행령 제정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제정안이 총회 개최를 위한 한시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효기간은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7)

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2)

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2)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7)

(10시12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44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이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개선·정비 대상 시설을 삭제하여 사업의 취지와 방식에 부합하도록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상부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

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적절해 보이고 그다음에 수정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9호 관련 전재수 의원안의 ‘이 법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는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항만재개발법상 토지 조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법 제27조와 같이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안 제17조제2항 제9호는 부대시설 대신 공작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제9호의 ‘부대시설’을 ‘공작물’로 수정하려는 의견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상부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을 그리고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처분계획서의 대상을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으로 확대하며 선수금 수령 대상을 ‘조성토지등’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각종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난개발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공공성이 약화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처분계획서의 대상을 조성토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토지와 상부시설을 연계하여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수금 수령 대상 정비는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래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5조 관련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상부시설계획은 차이가 불분명하고 현행법 제5조제2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은 대외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반면에 상부시설계획은 대내적·사업적 성격이 강하여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9조는 공공시설 및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공시설도 유치 대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을 별도의 호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안 제17조 관련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처분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아래의 표와 조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 의제되는 인허가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관리청이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 검사·준공인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조성토지등’으로 수정하고 준공 전 조성토지 등에 대한 사용 요건을 신고에서 허가로 강화하며 신고 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준공검사 시 인허가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의 이견이나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준공 전 사용 요건을 신고에서 허가로 강화하는 내용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타 개발법과 같이 신고에서 허가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준공검사 시의 사전 협의 절차는 제35조제2항에 규정하고 제35조제3항 관련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청에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기관장 등에게 준공 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래 표와 조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있어서 일부 사업시행자를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보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용 및 처분 대상을 ‘토지’에서 ‘조성토지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토지 조성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토지와 상부시설을 연계한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38조제1항 관련은 조 제목을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으로 수정하고 현행법 제38조제1항의 조문을 고려하여 ‘조성토지등’을 ‘취득한 조성토지등’으로 수정하며 안 제38조제1항 사용 및 처분계획은 안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8조에서 제출토록 하는 계획은 제1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사용 및 처분계획의 범위에서 작성되는 구체적인 사용·처분시행계획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38조제2항 관련은 제1항 개정에 맞추어 ‘토지’를 ‘조성토지등’으로 ‘처분’을 ‘사용 및 처분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조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설치비용’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확대

하려는 것으로 개발이익의 효율적 사용 및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부·지방자치단체·항만공사 및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관계부처 의견을 보시면 행정안전부는 기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벌칙·과태료 규정의 정비 등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본문 내용의 변경에 따라 벌칙 내용을 수정하고 환지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은 개정안들의 규정들을 조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와 조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시행일을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윤준병 의원안 제35조 등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재수·윤준병 의원안은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실시계획 포함 사항 등에 관해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되 하위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벌칙·과태료 규정의 개정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적용례와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단계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 조문과 관련한 적용례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의견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윤준병 위원 79쪽 이 내용은 행안부 의견을 수용한다는 뜻인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에서는 이 항만재개발법 왜 발의를 했는지 내용은 아시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소위원장 조경태 사실은 직무유기 수준에 있었어요. 지금 수조 원이 북항 재개발에 투입됐는데 상부 구조물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소위원장 조경태 그리고 일부 건설업체에다가 특혜를 줘 가지고 수천억의 이익을 보게 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 분은 자살하고 또 구속되고.

그리고 또 보면 아시겠지만 일부 언론사에다가 특혜성, 땅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아직 거기에 건물 같은 거 안 짓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소위원장 조경태 보니까 평당 450만 원인가 분양해 가지고 지금 그게 2500만 원인가,

일종의 투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것을 왜 방치합니까? 언론사라서 봐줍니까? 철저하게 투자하지 않는 데는 필요하다면 환수조치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언론사들이 땅을 그렇게 수천 평씩 가져야 됩니까?

일본의 요코하마에 보면 미나토미라이21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985년도부터 했는데요. 지금 가 보면 거기에 수천 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고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북항 재개발은 거의 실패 사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가지고 꼭 좀 잘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10시24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9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연안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연안의 침수·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시 이를 전문기관과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연안침수·침식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구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 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따른 영향평가와 중복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등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새로운 검토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검토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2항의 의뢰 주체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이 연안침식의 정의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안침수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전검토 절차가 추가되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 사업자에게는 해당 절차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안지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 산림청의 의견을 고려하여 안 제34조의8제1항제2호의 사방사업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표와 조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방금 전에 산림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경상북도는 전문기관 의뢰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청자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직접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꿈으로써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부칙과 관련해서 하위 법령 등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개정안과 달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4)

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0)

(10시26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박형수 의원,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10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수입수산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박형수 의원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을 그리고 임미애 의원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우리 어민의 생존권에 관련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형수 의원안의 경우 개정안이 인용하고 있는 제14조제5항은 금지의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인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해 보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임미애 의원안과 관련하여 수입·유통업자의 경제적 이익 침해 소지와 입법목적과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향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입 금지 수산물 품목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의 수정의견입니다.

법률 체계 등을 고려하여 임미애 의원안으로 정리하되 안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9)

(10시29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개정안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를 삭제하고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및 도용행위 예방에 개정안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과 달리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제가 좀 말씀을……

○소위원장 조경태 예, 위원님.

○주철현 위원 이게 보니까 법 27조 2항에 비밀누설 금지 의무 규정이 있고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64조 3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고 또 관련해서 징역하고 자격정지를 만약 개정안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형을 받는 사람에 대한 무슨 결격사유 같은 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규정이 없어요, 처벌조항만 만들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지금 현재 규정이 남아 있고 그런데 이거 덜렁 바꾼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김성완 예, 지금 자격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판례랑 논문들을 다 찾아봤는데 이게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자격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자격정지 그리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협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일종의 민간기관이라서 협회 자격에 관해 규정하는 게 적절한지도 조금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례를 보시면 보통 자격정지 규정을 병과하는 규정도 있고 이런 협회 같은 경우에 그냥 자격정지 없이 일반적으로 처벌만 하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기도 하고 64조 3호 보게 되면 비밀누설의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현재 있다니까요. 조항이 있는데 또 조항을 만든다고 하니까…… 물론 부정 도용, 불법사용인가 도용 그게 처벌 조항이 새로 추가되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처벌 조항이 있어요, 64조 3호에. 그래서 또다시 만드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경태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정부 측에서는 이의 없다는데……

○주철현 위원 아니, 차관님.

○소위원장 조경태 차관님 아니고 실장님.

○주철현 위원 아, 실장님, 64조 3호에 27조 2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 27조 2항이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이미 있어요. 있는 것을 또다시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이번에 기존에 있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추가해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주철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없애든지 수정하든지 해야지 가만히 놔두고 이거 추가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러한 법을 위반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 해당 자격증 가진 사람들의 무슨 결격사유로 규정하

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규정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조항도 다시 좀 앞뒤로 맞추고 결격사유도 정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법에 이미 금지 조항이 있는데, 처벌 조항이 있는데 또 처벌 조항을 같은 것을 만드니까 중복돼 있다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아니, 이것은 도용을 추가하는 거지 중복된 것은……

○주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용 말고 비밀누설 처벌 조항이 이미 있다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있습니다. 사항별로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데 비밀누설 내용을 또 처벌한다고 하니까 비밀누설 부분은 처벌 조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조경태 주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한번 좀 말씀 주신답니까.

○전문위원 김성완 위원님,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조 제3호 이것은 27조 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인데 27조는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협회 임직원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서……

○주철현 위원 그게 같이 포함돼서 포괄하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성완 약간 좀 구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하여튼 관련해서 좀 같이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완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정지라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비밀누설 이런 것은 다른 입법례나 이런 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또 아까 자격증 가진 분들의 결격사유라든지 개업 금지 이런 것을 다시 좀 정비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서 위원님.

○서천호 위원 지금 이 조항 신설하는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체가 좀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체가 차이가 있고, 내용도 지금 비밀누설에 비밀도 용하는 부분이 첨가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항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자격 부분은 실질적으로 준공무원 신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자격을 제한할 거냐 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울 것 같은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유사한 것 같지만 주체와 내용이 다른 부분이고 또 처벌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격 부분을 제한하는지, 일종의 행정처분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병과할 거냐 하는 부분은 기준 설정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토를 한 입장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지금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항이 중복된다는 우려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자격정지의 입법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

다.

○**주철현 위원** 그리고 담당 실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임직원은 전직 임직원이라고도 2년 이하의 징역이면 형도 잘 안 맞아요, 앞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전문위원께서 자격 부분을 한 번 더 보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다음번 회의할 때 한 번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회의할 때는 이것 다시 한번 상정하도록 합시다.

1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3) (10시36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금 지원방식 다양화 및 융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등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원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으로 융자도 포섭되는 용어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융자를 구체화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지원’의 용어를 ‘출연’이라고 명기하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지원 또는 융자’를 ‘출연 또는 융자’로……

○**윤준병 위원** 예, 밑의 3항에도 보면 출연금 그다음에 융자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용은?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앞의 지원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보조, 출연, 융자 이걸 다 포섭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융자를 구체화해서 추가하면…… 오히려 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지원의 범위가 예를 들면 출연이라면 ‘출연 또는 융자’ 이렇게 명기하면 훨씬 더 명확하지 않나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소위원장 조경태**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그건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출연금은 출연금 형태로 나가는 부분이고 지원은 매년 예산, 출연금이 아닌 형태의 보조금 형태나 이런 걸로 나가는 사업비적 성격의 돈이 있고.

그런데 용자라는 개념은 사실 지금 R&D 쪽 예산에서…… 타법들에는 용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성완 R&D 예산에서요?

○조승환 위원 예.

○전문위원 김성완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래서 그거는 용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라기보다는 약간 걱정이 앞서는 게 지금도 R&D 구조에서 정부 돈의 회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에 용자까지 들어와서 용자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는 건데 대통령령을 정할 때 좀 디테일하고 정치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령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보면 출연금을 지급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 이번에 새로 용자까지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쓰게 되면 예산을 출연한다는 그런 오해할 수 있는 용어가 돼서……

○조승환 위원 지원이 빠져 버려요, 잘못하면.

○윤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5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6)

(10시41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22항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2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와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의 검토의견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개정안은 종전 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적 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전 사업자가 동의해 주지 않거나 승계인이 행정제재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달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와 같이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제재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

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정의견은 다음 페이지의 표와 조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0)

(10시42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25항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23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어선들에게 선단을 편성해 조업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조업 및 항행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고 발생 시 구호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시 조업 및 항행 제한에 관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대형 어선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 기간 동안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데—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서 대형 어선사고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전에 어선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조업·항행 제한의 주체로 현행법 제13조·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제10조의 경우 신고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도 기상악화로 인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지사가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어선을 통한 위치통지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어선이 무선설비의 고장, 전파혼신, 통신권 이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어선이 위치통지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다른 어선을 통한 위치통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신 불가 상황에서도 위치통지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어선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다른 어선에게 교신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린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대행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어선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다 반영한 수정의견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부칙을 보시면 하위법령 정비 등 시행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조업·항행 제한 개정안도 동의합니다. 다른 어선을 통한 위치통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2)

(10시45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최보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개정안은 비상임심판관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 차별 우

려 표현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오른쪽 수정의견입니다.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던 사고라는 요건을 해측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현행에 비해 해측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측 사유가 확대될 우려가 있고 직무수행이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없어 해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표와 같이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5)

1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4)

(10시46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정부가 제출하고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13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최근에 저희 위원회를 통과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기본계획의 경우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그리고 시·도계획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입니다.

수정의견으로 관련 법률안 제명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관련 보고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법 104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통합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오른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등 보고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법에 따라 강화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복 제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어업인으로부터 제출받는 조업상황·어획실적 자료로 이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각종 자료를 활용해 대체 가능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기능 및 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실적 등 보고의무자의 범위가 넓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의 제명을 정부안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칙과 관련해서 개정안의 시행일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과 시행일을 맞추어 필요에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맞추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7)

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3)

1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1)

(10시49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14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총허용어획량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을 할당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위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른쪽 검토의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TAC 적용 대상에 대한 어획량의 보고와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에 따른 보고를 일치시키고 총허용어획량 배분 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파악한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감안하도록 하여 배분량 할당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며 보고 의무 위반 시 중복 제재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 마을어업권자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의 수정의견입니다.

현행 총허용어획량 시행계획에 마을어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마을어업 면허권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총허용어획량의 할당 기준에 마을어업 면허권자가 보고한 어획 실적을 추가하고 배분량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어획 실적에 마을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어획 실적을 추가하며 마을어업 어획 실적 보고 의무 위반 시 현행대로 벌금형을 존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조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왼쪽의 부칙 중에 배분량 할당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38조 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량 실적과 제3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전재실적·양륙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배분량을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오른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는 정보 축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개정안의 시행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불법어획물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현행법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의무 및 제재 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개정안은 불법어획물 유통·판매를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의무 부과 및 과태료 그리고 공표제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제품 분야에서의 도입 여부 그리고 다른 판매자·중개업자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가 실제로 어획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온라인쇼핑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공표가 권리 보호를 위한 사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구제가 어렵고 사생활 비밀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 등에 따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명단 공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만약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 제17조 2항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즉시 삭제하는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안 제17조제3항은 명단 공표 요건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여 제70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명단 공표를 위한 위반 기간 및 횟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기관 의견으로 온라인쇼핑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할당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불법어획물 온라인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금지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철현 위원님, 없습니까?

○주철현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및 15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9)

1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2)

(10시55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정부가 제출하고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18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제24조제1호에 따라 벌칙 적용 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른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에 추가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분실된 경우의 위치 통지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서 관련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분실된 경우에는 현행 어선법 제5조의2제3항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의 수정의견입니다.

인용 법안 제명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으로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행법 벌칙 규정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의 부칙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 제53조제1항제4호 수정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일부 수정하고 개정안의 시행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벌을 과태료라든지 과료로 자꾸 바뀌가는 추세인데 지금 이걸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무슨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사실상 강제력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과태료로 해서 간편하고 수시로 부과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이번에 제정되는데요. 이게 수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획실적이라든가 이런 통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를 떠받치는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좀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과태료를 높이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을 무서워하지 1년 이하나 벌금이면 사실상 아무런, 아까처럼 징역이면…… 별로 위하력도 없어요,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태료를 올려서 강제력을 강화해야지 과태료 하던 것을 벌금, 징역형을 부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경찰하고 검찰, 법원까지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것이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과잉 규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추세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여기 있는 건 현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 처벌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덜어 내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안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 그렇다면 앞에 개정된 법률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추세에는 반한다 이런 지적을 해둡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좀 새겨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4)

(11시00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19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이상기후·기후변화가 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가 이상기후·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업무 수행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일부 필요해 보입니다. 즉 센터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및 인력 등이 충분한지 그리고 기관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품종 수산종자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관계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협의 및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칙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9)

(11시01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20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수산물가공업에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폐업신고의 성격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행정 편익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폐업신고 시에도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에 폐업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폐업신고의 특성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리의 대상에서 폐업신고는 제외하고 영업자가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민의 행정 편익 제고 측면에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보고드린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조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하위 규정에 대한 정비が必要하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11시03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2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에 필요하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점용·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이를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개정안의 ‘타당하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절차의 민주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등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 심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 시행일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절차의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철현 위원님, 괜찮습니까?

○주철현 위원 예.

○소위원장 조경태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부 법률안이 몇 건 남아 있기는 합니까라는 시간 관계상 오늘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은 여기서 마치고 해양경찰청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양경찰청 관계 직원들이 착석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0)

(11시06분)

○소위원장 조경태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해경 소위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1번 연안안전지킴이 위촉권자 및 활동경비 지원 주체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에 지자체장을 추가하고 재정 지원 주체에 해경청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안사고면 주로 연안 근처에서 발생하는 사고잖아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어민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어민들보다는 관광객하고 갯바위 낚시객,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연안에서 어업활동 하다가 실종된 사례가 있거든요. 해마다 그런 실종 사례가 있어서 혹시나 이런 법률안이 좀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쭙본 겁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희 파출소가 97개 있거든요. 파출소마다 두 명씩 해서 194명의 연안안전지킴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채용도 주고 또 지자체에서 뽑아 놓으면 그 요원들, 연안안전지킴이를 해양경찰에서 교육을 시켜서 연안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물론 관광객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민분들이 실종된 사례, 이번에 다대포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 실종자분을 찾았습니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하여튼 이 지킴이분들이 그런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16184)

2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4)

(11시09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김성원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9페이지입니다.

1번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 시 면책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소속된 선박까지 조난 선박 예인 시 파손 등을 일으키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공공기관은 수난구호와 무관한 기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난구호의 협조 의무를 지는 수난구호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의무와 면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수난구호협력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긴급구조 지원기관, 공공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번 수색·구조·구난 활동 과정에서 조난자 사상 시 형의 감면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119구조법, 응급의료법에서는 구조활동 등에 대해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이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형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활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형의 감면을 두는 것은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색·구조·구난에 참여하는 다양한 대상을 고려할 때 ‘구조·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형벌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별도의 적용례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전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서천호 송옥주 윤준병 조경태 조승환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현중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항만국장 공두표

정책기획관 이상호

해양정책관 유은원

수산정책관 양영진

어업자원정책관 김인경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기획조정관 임명길

구조안전국장직무대리 유충근